

창원지방법원 2024. 8. 23 선고 2024가단1092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은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7. 19.

판 결 선 고 2024. 8. 23.

주 문

- 창원시 의창구 C 대 255㎡ 중 2/9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3. 6. 24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23. 7. 25. 접수 제29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E 주식회사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 한다)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144163호로 D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, 2019. 11. 7. “D는 소외 회사에게 14,396,7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”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, 원고는 2022. 2. 25.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금을 양도받아 같은 날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D에게 도달한 사실, 망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23. 6. 24. 사망하였고,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, G, H이 있는 사실,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협의’라고 한다)를 하였고, 이 사건 협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 중 D의 상속지분인 2/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이에 대한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의 주장

피고는 망인과 이 사건 토지 위 주택에서 약 30년 함께 생활하였다. 우리나라 정서상 노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살다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, 이 사건 협의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고, 피고는 D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2) 판단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).

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피고의 주소지는 창원시 의창구 I로 이 사건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점, ② 이 사건 토지에는 1998. 8. 6.부터 2006. 8. 31.까지 J 주식회사의 수목 및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약 30년 동안 피고와 망인이 거주한 주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로 이 사건 토지 중 2/9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규도